

# 폭염, 태풍으로 인한 가축 피해와 피해지원

글 : 편집부 정리

## ▣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8월 3일 현재 가축 107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피해상황(107천마리) : 닭 100천마리, 오리 7천마리, 돼지 45마리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 시행을 위하여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 대책상황실”을 확대하여 축산팀을 보강한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는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초 “여름철 가축관리 요령(7.6)” 및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방안(7.3)”을 제작,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각 20만부)하는 등 하절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 예방요령을 홍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재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실시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축산수첩 |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시설의 특성 상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에서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태풍으로 인한 피해

유난했던 폭염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상한 태풍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피해가 또 발생했다.

농수축산분야 피해 농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8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오정규)이 피해 현장(전남 지역)에 파견되어 상황을 점검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8월 29일까지 집계한 결과, 제 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가축 542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 가축피해상황 : 가축 542마리(소 2, 돼지 240, 닭 300수), 양봉 615군 폐사(전남 370, 광주 50, 제주 195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관련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8월 30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공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일손돕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분야 유관기관의 가용인력 7,400여명을 동원하여 낙과 수거, 벼 세우기, 파손된 비닐하우스, 해상·육상 가두리 시설 및 축사시설의 복구 및 철거 등을 실시한다.

우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식품부 장관 및 소속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된 복구지원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 낙과 등의 피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지원한다. 소속·산하기관들도 복구지원반을 편성하여 8월 30일부터 현장 복구지원을 실시한다.

#### \* 긴급 일손돕기 참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농협, 수협 등

긴급 일손돕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응급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군·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재해대책법상의 시설 복구 및 생계 지원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사고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 폭염 ·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피해지원 제도 (오리 부분 요약)**

**■ 폭염 · 풍수해 등으로 농어업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해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피해 지원 가능**

- 시 · 군 · 구 당 3억원 이상 피해 시 농림수산 식품부 지원
  - 3억원 미만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
- 축사파손 및 가축피해 지원 기준

구분	단가	구분	단가
종오리사	m <sup>2</sup> 당 130천원	오리-새끼	664원
육용오리사	m <sup>2</sup> 당 130천원	오리-중추	2,564원
부화장	m <sup>2</sup> 당 504천원	종오리-새끼	4,786원
		원종오리-새끼	39,500원

**■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에 소 · 돼지 · 말 · 가금류에 대하여 폭염 특약을 가입한 농가(1,066건)는 보험에서 피해보장**

**■ 신고 및 지원 절차**

**〈농업재해대책법〉**

- 피해발생 ⇒ 피해신고(피해자 → 읍 · 면 · 동) ⇒ 피해복구 계획수립(시 · 군 또는 시 · 도) ⇒ 3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보고(시 · 도 → 농식품부)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복구지원

**〈농업재해보험법〉**

- 피해발생 ⇒ 피해신고(피해자 → 일선가입농협) ⇒ 피해여부 확인 및 손해평가(손해평가인) ⇒ 결과보고(지역농협 → 농협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심사(농협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농협손해보험 → 일선농협 → 피해농가)

